

- 다대해수욕장일원자연녹지해제및건축제한계획철회에관한청원의 건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접수일자 및 제출자 : 1995. 9. 6 — 한기원 의원

나. 회 부 일 자 : 1995. 9. 6

다. 상 정 일 자 : 제4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1995. 9. 14)상정 채택

2. 취지설명의 요지(소개의원 : 한기원 의원)

- 부산시가 국유지를 고액으로 불하하고도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자연녹지 지역과 건축제한지역으로 고시하려고 하는 의도와
- 물운대 공원개방으로 시민의 휴식처로 활용하면서도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휴식공간 부족으로 물운대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이 많음
- 지방공업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된다 하여 건축제한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자연녹지 해제에 관한 결정권자는 도시계획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있음.
- 다수 민원인에 대한 재산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 지역 해제를 본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결정권자인 부산광역시장에게 요구함이 가하다고 판단됨

○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 제한의 목적을 상세하게 할 것과 2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이내로 연장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 재산권 활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대포항 종합개발공사와 물운대 유원지 계획이 이루어질 경우 해수욕장 일원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계획이 확정된 후 소유자로 하여금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함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일문일답식으로 진행) : 생 략

5. 토론의 요지(찬성 : 손판암 의원)

물운대는 부산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27호로 지정된 곳이고 다대 객사 시지정 유형문화재 제3호와 정운공 순의비가 시지정 유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천혜의 자연경관이 있는 유원지로서 하루 빠리 자연녹지를 해제하여 유원지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함이 타당 함.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관계 기관에 송부하는 찬성 토론

6. 심사결과 :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 검토하도록 하는 의견서 채택

첨부 : 의견서 1부. 끝.

청 원 의 건 서

□ 건 명 : 다대해수욕장 일원 자연녹지 해제 및 건축제한 계획 철회의 건

□ 청 원 인 : 다대1동 468-9번지 유 재 등 외 156명

□ 소개의원 및 소개년월일 : 한 기 원 의원('95. 9. 14)

□ 청원요지

- 부산시가 국유지를 고액으로 불하하고도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자연녹지 및 건축 제한지역으로 고시 할려고 하는 의도와
- 물운대 공원개방으로 인하여 시민의 휴식처로 활용하면서도 자연녹지 지역으로 고시 하므로써 물운대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으므로 자연녹지를 해제 요망
- 원목하치장, 원목가공단지 및 수산물 가공단지, 운수장비 단지 등 지방공업단지 조성 계획에 포함된다하여 건축제한을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함

□ 의견내용

하루빨리 자연녹지를 해제하여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의거 명실공히 유원지로서 면모를 갖추 수 있는 건축물을 건립하여 서낙동강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청원인들의 요구와 같이 자연녹지 해제 및 건축허가 제한구역 지정 계획의 철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9.

부 산 광 역 시 사 하 구 의 회